

■ 개정: 미래캠퍼스 IRB 표준운영지침 개정(안)

가. 개정 사유

- 제106차 IRB 정규회의 결의

나. 주요 내용

- 1) 제2장 제5조(위원회 구성 및 수당) 외부위원에 대한 정규회의 참석 수당을 회당 150,000원으로 증액하고, 2023년 3월 정규회의부터 적용

다. 주요 토의과제 및 참고사항

- 생명윤리심의위원회-69(2023. 3. 21.)

라.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제2장 제5조(위원회 구성 및 수당)</p> <p>⑩ 위원은 위원회 활동 참여 정도에 따라 규정대로 보수를 지급받는다.</p> <p>1. 정규회의에 참석했을 때, 내부위원의 참석비는 50,000원으로 하며, 외부위원은 100,000원으로 한다.</p>	<p>제2장 제5조(위원회 구성 및 수당)</p> <p>⑩ 위원은 위원회 활동 참여 정도에 따라 규정대로 보수를 지급받는다.</p> <p>1. 정규회의에 참석했을 때, 내부위원의 참석비는 50,000원으로 하며, 외부위원은 150,000원으로 한다.</p>	

마. 개정 규정 전문 별첨